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 독점금지법 적용의 요건

- Hoffman-La Roche Ltd. v. Empagran S.A. -

이기종 |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머리에

미국은 1982년 자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외거래독점금지개선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FTAIA)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해 개정된 서면법 제6조a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¹⁾.

제6조a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을 수반하는 행위]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7조는 (수입거래나 수입통상 이외의)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을 수반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와 같은 행위가

(A)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이 아닌 거래나 통상에 관하여, 혹은 외국과의 수입거래나 수입통상에 관하여;

(B) 미국에서 그와 같은 거래나 통상에 관여하는 자의 외국과의 수출거래나 수출통상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 및

(2) 그와 같은 효과가 본 조를 제외한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claim)을 야기하는 경우. [후략]

그러나 입법의도와 달리 동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방법원들간의 입장이 갈리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학자들의 의견도 극심한 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던중 작년 말 해외의 피해

1) 번역은 공정거래위원회, 미국·EU·독일·일본의 경쟁법규(1999)에 따름.

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Empagran 사건에 대한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허가하자, 법조계·학계 및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자국 사업자들이 이 사건의 피고로 되어 있는 각국 정부들은, 연방대법원에 권고의견(amicus brief)을 공식 제출하는 등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확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6월 선고된 판결²⁾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으며, 이는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법을 역외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Empagran 판결의 배경·취지 및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 뒤, 이 사건이 국제경쟁정책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건의 경과

■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상고인)들은 미국과 외국의 비타민 제조업자들 및 유통업자들로서, 미국과 외국의 비타민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가격채정 공모에 가담했음을 이유로 미국과 외국의 구매자들에 의해 집단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피고측은 외국 구매자들과 관련된 청구의 각하를 신청하였다. 이들 구매자들은 우크라이나, 호주, 에쿠아도르 및 파나마 소재의 비타민 유통업자들로서 미국 영토 밖에서 제품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전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wholly foreign)”임이 그 이유였다. 지방법원은 FTAIA를 적용하였으나, 동 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미국내의 구매자들은 별도의 소송에 참가하고, 외국 구매자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콜롬비아 특별구 연방고등법원, D.C. Circuit)에서는 판사들 간에 의견이 갈렸으나 (4:3), 다수의견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항소심판결은, (i) 비타민 제조업자들의 가격채정공모가 미국내 거래 또는 통상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효과(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미국내 비타민 가격의 상승)를 가져왔고, (ii) 이러한 효과는 “[서면법상의] 청구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므로(give rise to a claim)” (즉, 피해를 입은 미국내 구매자가 서면법상의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FTAIA의 예외요건을

2) 124 S.Ct. 2359 (2004).



충족한다고 보았다. 동 판결은, 문제된 행위가 외국에 미친 효과(우크라이나, 파나마, 호주 및 에쿠아도르에서의 가격인상)는 그 행위가 미국내에 미친 효과(미국내에서의 가격인상)와 무관(independent)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FTAIA의 문언이나, 입법의 역사 및 유해한 가격책정행위의 저지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연관의 결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피고는 상고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해 2000년대 들어 발생한 고등법원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하였다. 즉, 연방제5고등법원은 외국에서의 피해가 국내에서의 피해와 무관한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³⁾, 연방제2고등법원은 같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으므로⁴⁾,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⁵⁾.

첫째, FTAIA상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는 미국의 수출거래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통상(foreign commerce)에도 적용될 수 있다. FTAIA의 원래 법안에는 “수출거래 또는 수출통상(export trade or export commerce)”이라 되어 있던 것을 하원 법사위가 “[수입거래 또는 수입통상을 제외한] 거래 또는 통상(trade or commerce)”으로 고친 것은, 미국의 수출이 아닌 전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통상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다.

둘째, 가격책정행위가 외국 및 미국내의 피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만, 외국에서의 피해와 미국내에서의 피해가 서로 무관한 것인 경우, 오직 외국에서의 효과에만 근거한 청구는 FTAIA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 (i) 연방대법원은 모호한 제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상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해왔다. 이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예양, comity)에 근거한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상이한 국가의 법들이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미국내에 피해를 가져올 경우에

3) Den Norske Stats Oljeselskap As v. HeereMac Vof, 241 F.3d 420 (5th Cir. 2001).

4) Kruman v. Christie's Int'l PLC, 284 F.3d 384 (2d Cir. 2002).

5) Breyer 판사가 다수의견을 작성하였으며, 반대의견은 없었고, Scalia 판사의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에 Thomas 판사가 동참했을 뿐이었다.

는 미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오직 외국에서의 피해만을 근거로 하는 청구에까지 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고측의 주장과 달리)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상이한 내용의 독점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히 상이한 구제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예양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 (ii) FTAIA의 문언 및 입법사를 볼 때, 동 법은 서면법이 적용되는 해외에서의 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어쩌면 축소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지, 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측의 문리적 해석은 동 법의 이러한 입법의도와 저촉되며, 원고측이 예시한 판례들도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위법행위의 저지효과에 근거한 원고측의 주장도 독점금지법 집행기관들의 권고의견과 상반되어 이유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원고측의 주장대로 문제된 해외에서의 피해가 미국내에서의 피해와 실제로 무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쟁점의 분석

■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변천

일찍이 연방대법원은 1909년에 나온 American Banana 판결에서 미국 독점금지법은 미국 영토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 그러나 이후 국제무역이 미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해감에 따라, 후속 판결들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1945년 연방제2고등법원(Second Circuit)의 Alcoa 판결에서 Hand 판사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미국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의도로 행해진 경우에만 미국의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소위 “효과기준(effect test)”을 도입하였다⁷⁾. 이후 이 기준은 (비록 다양한 변형들이 있기는 했지만) 점차 대다수 연방법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넓은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세인 가운데, 예외가 되는 판결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1970년대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던 시기에 나온 연

6)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213 U.S. 347 (1909).

7)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d 416 (2d Cir. 1945).



방제9고등법원의 Timberlane 판결은, 효과기준에 의해 미국의 관할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예양(comity)에 근거한 기준을 도입하였다⁸⁾.

그러나 1993년 연방대법원의 Hartford 판결은 효과기준을 재천명하였다⁹⁾.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 사업자들의 행위가 영국법상은 적법하나 미국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영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권고의견(amicus brief)을 통해, 영국의 재보험시장에 대하여는 영국 의회가 포괄적인 규제관할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에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영국법에 내재한 균형이 파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국제예양이란 먼저 실체적 관할이 확정된 후에야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행위가 아닌 한 미국법상의 금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반경쟁적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미국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 후 2000년대 들어 FTAIA의 해석을 둘러싸고 연방고등법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본 평석에서 다루고 있는 Empagran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할 기회로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법 적용 소극론의 논거

연방대법원의 Empagran 판결은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던 외국 정부들과 다국적기업들의 환영을 받았다.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법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판결은 국제예양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법의 지나친 적용 확대는 타국의 주권과의 충돌을 가져올 것이다¹⁰⁾.

둘째, 동 판결은 FTAIA의 입법의도에 부합한다. 동 법은 미국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예컨대, 국제카르텔의 경우 미국내에 가상의 원고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¹¹⁾

8) Timberlane Lumber Co. v. Bank of America, 549 F.2d 597 (9th Cir. 1976).

9)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509 U.S. 764 (1993).

10) "Hoffman-La Roche v. Empagran - the decision analysed," 15 June 2004, available at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news_item.cfm?item_id=1779 (2004년 12월 9일 방문)(이하 "Decision analysed").

11) "Perspectives on Empagran," Antitrust Source at 6 (Sep. 2004), available at <http://www.abanet.org/antitrust/source/sept04/Sep04Empagran.pdf> (이하 "Perspectives")(Jonathan S. Franklin의 발언).

셋째,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자국 독점금지법의 일방적인 역외적용보다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동 판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¹²⁾

넷째, 외국 정부는 각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내용의 경쟁법을 자국 영역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 피해자가 미국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미국이 3배배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3배배상제도가 꼭 보편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¹³⁾

다섯째, 동 판결은 외국 정부들이 시행하는 신고자 면책제도(leniency program)의 성공적인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면책을 위해 외국 정부에 신고(자백)한 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여 3배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외국 정부의 면책제도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¹⁴⁾

여섯째, 동 판결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고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각국의 상이한 제도에 대처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¹⁵⁾

일곱째, 외국 피해자의 미국 제소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로부터 사건이 폭주하여 미국 법원이 세계 법원(World Court)이 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 법원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¹⁶⁾

■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법 적용 적극론의 논거

연방대법원, 연방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가 일치하여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법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의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법원과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법 적용에 적극적인 논자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의 Empagran 판결은 국제예양에 관한 동 법원의 Hartford 판결에 상치된다.¹⁷⁾

12) Hannah L. Buxbaum, "Jurisdictional Conflict in Global Antitrust Enforcement," 16 Loy. Consumer L. Rev. 365 at 376 (2004).

13) Donald I. Baker, "Revisiting History: What Have We Learned about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That We Would Recommend to Others," 16 Loy. Consumer L. Rev. 379 at 407f. (2004).

14) Decision analysed, supra note 10.

15) Perspectives at 6.

16)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Defendants-Appellees (09/04/2004),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cases/f205300/205386.htm> (2004년 12월 9일 방문).

17) Perspectives at 2 (Edward Swaine의 발언).



둘째,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연방대법원의 *Empagran* 판결은 법전상의 문언보다는 입법의도와 입법사에 치중하고 있다.¹⁸⁾

셋째, 동 판결은 미국내의 피해와 외국에서의 피해가 전혀 무관한 극단적인 경우만을 해결했을 뿐, 구체적인 경우에 양자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미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급심에 막중한 심사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¹⁹⁾

넷째, 미국법상의 까다로운 원고적격(standing) 요건을 고려할 때 소송이 폭주할 것이라는 고려는 기우에 불과하다.²⁰⁾

다섯째, 국제독점금지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초과 국가로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하여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²¹⁾

여섯째, 외국 피해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를 착취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 국제카르텔의 숫자가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²²⁾ 예컨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처럼 카르텔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피해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하지 못할 경우 국제카르텔은 불충분한 제재만을 받게 되어 카르텔의 역지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²³⁾ 결국 국제카르텔의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카르텔을 세계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한 경쟁규범에 따라 단일한 집행기관에 제소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법과 미국 법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²⁴⁾

일곱째,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이 인정될 경우, 각국은 자국민들이 미국 법원에 제소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자국 독점금지법상의 민사제재조치를 개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²⁵⁾

18) Id.

19) Id.

20) "The Supreme Court, 2003 Term Leading Cases," 118 *Harvard L. Rev.* 476 at 484 (2004).

21) William J. Tuttle, "The Return of Timberlane?: The Fifth Circuit Signals a Return to Restrictive Notions of Extraterritorial Antitrust," 36 *Vand. J. Transnat'l L.* 319 at 365f. (2003).

22) Salil K. Mehra, "Foreign-Injured Antitrust Plaintiffs in U.S. Courts: Ends and Means," 16 *Loy. Consumer L. Rev.* 347 at 359. (2004).

23) Margaret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Contemporary International Cartels and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Policy," 71 *Antitrust L. J.* 801 at 851. (2004).

24) Michael D. Hausfeld, "Five Principles of Common Sense Why Foreign Plaintiffs Should Be Allowed to Sue under U.S. Antitrust Laws," 16 *Loy. Consumer L. Rev.* 361 at 363f. (2004).

25) Clifford A. Jones, "Exporting Antitrust Courtrooms to the World: Private Enforcement in a Global Market," 16 *Loy. Consumer L. Rev.* 409 at 430 (2004). EU에서의 민사구제조치의 강화에 관하여 Donncahd Woods,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Rules: Modernization of the EU Rules and the Road Ahead," 16 *Loy. Consumer L.*

■ 미국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적극론자들은 외국 피해자에 대한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이 미국 소비자들 뿐 아니라 외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행사해 타국의 주권과 충돌을 야기시켜도 좋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미국법이 외국 소비자들에게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주장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각국은 그 경제여건의 차이로 인해 최적의 경쟁정책이 무엇이나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갖게 된다. 예컨대, 수출 위주의 국가와 수입 위주의 국가는 서로 최적의 경쟁정책이 다르며, 세계 전체를 위한 최적의 경쟁정책과 개별 국가를 위한 최적의 경쟁정책 사이에도 괴리가 있다.²⁶⁾ 또한 대규모 경제를 위한 최적의 경쟁정책과 소규모 경제를 위한 최적의 경쟁정책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²⁷⁾

둘째, 각국의 그 문화(국민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경쟁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경쟁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그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²⁸⁾ 예컨대, 집단주의적 성향과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국가의 경우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문화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²⁹⁾

셋째, 각국의 제도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한 나라에서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경쟁법상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작동에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브라질의 경우 카르텔의 신고자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는 것은 검사인데, 한 검사가 면책에 동의하더라도 다른 검사는 기소할 수 있어, 면책을 위해 자백한 자가 자기부죄의 위협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면책제도 자체의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³⁰⁾

Rev. 431 (2004) 참조.

26) Andrew T. Guzman, "Is International Antitrust Possible?" 73 N.Y.U.L.Rev. 1501 (1998).

27) Michal S. Gal, *Competition Policy for Small Market Economies* (2003).

28) 필자는 각국의 문화와 경쟁정책 사이의 관계를 비교문화심리학을 원용하여 통계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i Jong Lee, *Cultures and Cartels: Cross-Cultural Psychology for Antitrust Policies*, Institute for Consumer Antitrust Studies, Loyola University Chicago, Working Papers, 2003, available at www.luc.edu/law/academics/special/center/antitrust/cultures.pdf. (2004년 12월 9일 방문).

29) 이러한 필자의 이론을 지지하는 문헌으로 Rajan Dhanjee, *The Tailoring of Competition Policy to Carribean Circumstances - Some Suggestions*, Centre on Regulation and Competiton,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 79, 2004, available at <http://idpm.man.ac.uk/crc/wpdl5099/WP79.pdf> (2004년 12월 9일 방문) 참조.

30) "Brazil grants leniency," 14 Nov. 2003, available at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news_item.cfm?item_id=1524 (Mauro Grinberg 변호사의 코멘트).



따라서 미국 독점금지법이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한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국제적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경쟁규범은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문화적·제도적 배경들을 모두 감안하여 신중하게 새로이 형성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³¹⁾

맺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과 비타민 국제카르텔을 제재한 데 이어, 새로이 국제해운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외국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역외적용의 근거를 명시하고 해외송달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우리 공정거래제도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국제화의 또 한 측면, 어쩌면 더욱 중요한 측면은 국제경쟁규범 형성과정에서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제경쟁규범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의 장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그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경쟁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전환기 경제 등의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양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관건인 하나인 경쟁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를 위해서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지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여건의 상위가 커서 긴밀한 경제통합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현저하므로, 이러한 문화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측면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쟁규범의 조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1) 예컨대, 2002년의 서울경쟁포럼에서는, 모든 나라에 단일한 국제경쟁규범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에 대하여 각국의 경제여건에 맞춘 특별규정들을 마련하는 방안(special treatment)이 하나의 독립된 session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